

# 병역법 시행령안에 대한 대중문화예술(음악) 분야의 의견서

2021. 2. 22. 입법예고 되어 2021. 6. 23. 시행을 앞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제12조의3에 대하여,\* 케이팝(K-Pop) 산업을 주도해온 한국음악콘텐츠협회와 이하 26개 회원사(이하 “협회”라 함)는 대중문화예술(음악) 분야를 대표하여 병역법 시행령이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케이팝의 발전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 1. 시행령 개정의 이유와 내용

본 시행령은, 「병역법」이 일부개정 되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법을 제 17684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하위법령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 및 징집·소집 연기 상한 연령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제60조 제6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② 지방병무청장은 [...]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3.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⑥ 제2항에 따른 [...]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와 연기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방부 사이트에 입법예고 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서의 7페이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에 명시된 2020년은 2021년의 오키인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하여 적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제출하여 대통령령으로 개정되는 시행령(안) 제124조의3 제1항 제3호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안) 제124조의3 ①**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상훈법」 제17조의3에 따른 문화훈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0호에 따른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④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0세

이를 정리하면, 입영연기 가능한 대중문화예술인은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으로, 입영연기 상한연령은 30세입니다.

## 2. 문화훈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중문화예술인이 학업과 무관하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문화훈장 혹은 문화포장을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함) 장관에게 추천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훈장만 수여되고 포장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본 시행령을 적용받으려면 문화훈장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에 관한 병역법 시행령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먼저 문화훈장을 받은 후,
- 2) 문체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 3) 문체부장관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연기를 추천하면,
- 4) 마지막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연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20대의 대중문화예술인이 이 절차를 따르고자 하여도 첫 번째 단계인 문화훈장을 받는 것부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훈장을 받으려면 포상후보자로 추천받아야 하는데, 대상자가 되려면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했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난달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포상후보자 추천 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기준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090호

## 2021년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포상후보자 추천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 및 종사자를 선정·포상하기 위하여 『2021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후보자를 추천받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포상 대상**

-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 및 종사자
  - 배우, 성우, 희극인, 가수, 연주자, 모델 등 대중문화예술실연자
  - 작가, 감독·PD, 작곡가, 작사가 등 대중문화예술창작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중문화예술제작자, 대중문화예술스태프 등

**□ 포상 훈격**

- **문화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 훈장은 15년 이상,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은 3년 이상 활동하며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
  - ※ 포상 훈격 및 규모는 2021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추후 협의를 거쳐 결정 예정

**□ 추천 기간 : ~ 2021.5.13.(목)**

[그림] 2021년도 대중문화예술상 추천 공고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이에 따라 20대의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15년이라는 기간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훈장 포상자로 추천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심사를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없고, 당연히 문체부 장관에게 입영연기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입법예고 된 시행령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는 단순히 계산해도 알 수 있습니다. 10대 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케이팝 가수가 15년 경력 조건을 충족하려면 30대가 넘어야 합니다. 30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에 현실적으로 부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상자의 범위 제한을 넘어, 향후 아무도 대상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 3.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의 취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국방부가 입법예고 한 본 시행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안의 취지를 몰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향후 이 법안의 대상이 되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는 전무할 것이라고 예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병역법」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 근거를 마련한 이유는 20대 병역의무자가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병역법 시행령」에서는 그 대상자를 1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필요한 훈장 포상자로 정하고 과도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 법안을 발의하였던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연기 범위는 본인의 꿈을 위해 연기할 수 있는 제도로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이투데이 2020.12.10.일자). 그리고 법안에서 제안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 속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국제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현행법상 높은 대학진학률로 70%에 가까운 20대가 대학생/대학원생임에 따라 입영 연기를 보장하고 있으며, 체육 분야는 국내외적으로 일정 성과를 얻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반해 대중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 활약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타 집단과 동등한 수준의 권익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대중문화예술은 병역이행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임에 따라 시기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젊은 청년들의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에 대하여 징집,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에 의하면, 병역법에 입영 연기 대상자로 대중문화예술인을 포섭한 이유는, 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원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②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에 대한 타 집단과 동등한 수준의 권익 보장, ③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현실 반영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1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필요한 훈장 수여자’와 같은 높은 기준을 제시하여 그 대상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케이팝 가수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국회의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법안의 효력을 축소해버린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의도와 다르게 정부의 시행령이 대중문화 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제도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4.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우려를 표합니다.

본 병역법 개정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활동을 위해 불필요한 학업 진학을 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활동하려면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원에 진학하라고 답변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학업 진학을 연예인의 편법적 입영지연 수단이라고 비난합니다. 또한, 본 시행령에서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훈장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한 것은 전투병력 부족과 입영연기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 법안은 입대를 면제받는 혜택이 아닌, 단지 입영을 “연기” 하는 자에 관한 것이므로, 전투병력 부족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영연기 가능한 사람 중에는 ‘벤처기업 창업자’ 및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등 제8호 자목), 이 역시 산업 발전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에게는 산업에 기여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했다는 사실 혹은 투자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입영연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되어 대중문화산업 발전에 이미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젊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같은 이유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입영연기를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국방부조차 대중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이중적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 중에서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아티스트들은 산업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이들이 병역을 회피할 것이라 우려하며 더 많은 규제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중음악산업계가 직면한 어렵고도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오해와 편견을 근간으로 하는 병역정책들은 특히 대중음악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케이팝 산업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케이팝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기대 이상의 파급효과를 거두면서,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대하여도 병역특례 정책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지지해주시는 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척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것은 면제가 아니라 제한연령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군복무 전까지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5. 적용 대상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안)에서 적용 대상을 훈·포상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병역 이행 전 입영 대상자가 한창 활동할 시기에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 법안이 향후 케이팝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진흥책이라고 본다면, 분명 법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령이 설계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는 과거 훈장을 받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역대 문화훈장 수상자의 평균 연령은 67.7세입니다. 이를 보더라도 훈장 수상을 입영연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수상연도	수상자명	출생년도	수상당시 연령(만)
2011	하춘화	1955년생	56세
	신중현	1938년생	73세
	이수만	1952년생	59세
2012	싸이	1977년생	35세
	송창식	1947년생	65세
	故금사향	1929년생	83세
2013	조용필	1950년생	63세
	패티김	1938년생	75세
2014	명국환	1933년생	81세
2015	남일해	1938년생	77세
2016	태진아	1953년생	63세
2017	남진	1946년생	71세
2018	故조동진	1947년생	71세
	BTS	1997~1992년생	21~26세
2019	양희은	1952년생	67세
2020	윤항기	1943년생	77세

[표] 역대 문화훈장 수상한 가수 명단 (2010~2020년)

병역법 시행령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기준을 현실화해 주십시오.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일자 연기 및 불필요한 학업 진학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20대에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선발 기준이 필요합니다. 20대 초반의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병역의 의무가 얼마나 준엄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협회와 회원사 소속 아티스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과거의 부끄러운 병역 면탈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공정 병역 문화 정착에 귀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로 인하여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환경에서도 케이팝 가수의 해외 공연 등에 제약으로 작용했던 관련 정책의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정부 담당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보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케이팝 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 4. 1.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다날엔터테인먼트, 드림어스컴퍼니,  
드림티엔터테인먼트, 뮤직팩토리, 미디어라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 알비더블유,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엔에이치엔박스,  
엠엘디엔터테인먼트, 예전미디어, 오감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워너뮤직코리아, 유니버설뮤직,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지니뮤직, 카카오엠, 캔엔터테인먼트, 플렉서스,  
플레디스

**[참고 1] 병역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8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2.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2.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3.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한다.
-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 ⑤ 제2항에 따라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되거나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⑥ 제2항에 따른 학교·연수기관 및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와 연기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 [참고 2] 병역법 시행령(안) [시행 2021. 6. 23.]

### 제124조의3(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 ①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중 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상훈법」 제17조의3에 따른 문화훈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0호에 따른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영등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추천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체육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략)
-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받은 대한체육회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등의 연기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추천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입영등의 연기 추천서
- ④ 제3항에 따라 연기 추천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 연기 사유 등을 고려하여 입영등의 연기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7세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0세
- ⑤ 법 제60조제4항에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제2호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1.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
  2.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이 취소된 경우
  3. 본인이 입영등 연기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4.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등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 [참고 3]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등

(영 제129조제7항 및 훈령 제23조 관련) - 현역병 입영업무규정 [별표]

[시행 2021. 2. 10.] [병무청훈령 제1763호, 2021. 2. 10., 일부개정]

8.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영 제129조제1항제8호)

자. 다음 사항 해당자로서 창업한 사람은 2회에 한정하여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연기

- 1) 벤처기업 창업가, 벤처기업 예비창업가, 정부부처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사람
- 2) 사회적기업창업가(대표자), 예비사회적기업 창업가(대표자), 정부부처의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참여한 사람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최 주관 “창업경진대회(소셜벤처·사회적 기업 경연대회 포함)” 포상 순위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 4) 훈격이 대통령상 이상인 창업경진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사람
- 5) 창업아이템과 관련한 본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보유한 사람
- 6)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사람

### [참고 4] 상훈법

**문화훈장** → 상훈법 제17조의3(문화훈장)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상훈법 시행령 [별표1] 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

차. 문화훈장	1등급 : 금관 문화훈장	2등급 : 은관 문화훈장
	3등급 : 보관 문화훈장	4등급 : 옥관 문화훈장
	5등급 : 화관 문화훈장	

\* 상훈법의 적용과 기준 등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름.